제3축: 수탁과 도산 시 보호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제3축은 수탁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자신의 토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2022년 이후 두 허브가 가장 눈에 띄게 수렴한 축입니다. 스위스의 답은 법률에 있습니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는 파산자가 고객을 위해 보유하기로 약정한 가상자산을 파산관재인이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자산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배정되어 있거나, 여러 고객을 위해 집합적으로 보유되면서 기록을 통해 각 고객에게 즉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42b조는 이 권리를 자산 접근에 필요한 데이터에까지 확장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BankA) 제16조 제1bis호가 이러한 자산을 법률상 당연히 분리되는 보관자산으로 취급합니다. 2024년 6월 FlowBank의 파산은 FINMA의 청산명령부터 혼합 보유 자산의 귀속에 이르기까지 관련 장치를 시험대에 올렸고, 기록이 잘 갖춰져 있으면 법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1]

싱가포르의 답은 계약과 형평법에서 출발하여 규제로 발전했습니다. 2023년 이전에 고객의 지위는 이용약관이 신탁을 설정했는지(*Quoine*, *ByBit*), 아니면 채무자-채권자 관계를 설정했는지(Hodlnaut와 Zipmex 구조조정에서의 분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응했습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이제 DPT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자산을 법정 신탁으로 보유하고, 자기 자산과 분리하며, 일일 대사(reconciliation)를 하고, 고객 자산의 과반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2] 그 결과 라이선스를 받은 싱가포르 수탁기관의 고객은 2018년 지급불능·구조조정 및 해산법(IRDA)이 존중하는 신탁의 수익자가 되며, 이로써 스위스의 입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세 가지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스위스 규칙은 파산법이므로 라이선스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수탁기관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신탁 요건은 라이선스 보유 기관에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없는 싱가포르 사업자의 고객은 다시 이용약관 분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스위스법은 파산 시점에 기록을 통한 귀속을 요구합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신탁은 신탁재산의 확정성을 요구합니다. 옴니버스 지갑은 신탁이 대체 가능한 집합물의 비례적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를 충족하며, 법원은 이 점을 주식에 대해 인정했고 이제 토큰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셋째, 스테이킹과 대여는 자산을 두 체계 모두의 밖으로 가져갑니다. 플랫폼에 대여한 토큰은 스위스 채무법 제312조에 따른 소비대차이자 싱가포르법상 채무이므로, 대여자는 두 곳 모두에서 무담보 채권자의 순위에 놓입니다.[3]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분리의 법적 근거	DEBA 제242a/242b조. BankA 제16조 제1bis호	PSA s. 23 및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신탁(라이선스 보유 기관). 그 밖에는 일반 신탁법
적용 범위	파산한 모든 수탁기관	라이선스를 받은 DPT 서비스 제공자. 그 밖에는 계약에 따름
옴니버스 지갑	기록을 통해 즉시 귀속시킬 수 있으면 허용	비례적 지분에 대한 신탁과 일일 대사가 있으면 허용
콜드 스토리지 요건	법률상 없음. 은행에 대한 FINMA의 기대	고객 자산의 과반을 콜드 월렛에 보관(MAS 규칙)
	소비대차. 무담보 채권	채무. 무담보 채권(Hodlnaut, Vauld)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대여 또는 스테이킹된 자산		
접근 데이터	DEBA 제242b조: 데이터에 대한 권리	법원 명령. 신탁 수익자의 정보청구권
사례	FlowBank(2024)	Hodlnaut, Zipmex(2022년 이후)

실무 노트

두 허브에서 영업하는 수탁기관은 하나의 수탁 구조로 두 체계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자산을 지갑 단위에서 자기 자산과 분리하고, 모든 옴니버스 지갑에서 각 고객의 지분을 매일 귀속시키는 대사된 보조원장을 유지합니다. 스위스 수탁계약에는 고객을 위해 보유한다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약정이 DEBA 제242a조의 발동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약관에는 고객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신탁 선언을 넣습니다. 싱가포르의 콜드 스토리지 비율은 스위스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룹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스테이킹 상품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킹하는 고객은 두 곳 모두에서 보호 대상 자산군을 벗어나므로, 이를 쉬운 말로 고지받아야 합니다.

주

1. DEBA (SR 281.1) 제242a조 및 제242b조, DLT법으로 신설되어 2021년 8월 1일 시행; BankA 제16조 제1bis호. FlowBank에 관하여는 제H편 제VII장 및 제D편 제IV장 참조. ↩
2. 개정된 Payment Services Act 2019, s. 23; Payment Services (Amendment) Regulations 2023; 2023년 7월 3일 MAS의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규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조치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회신; 해당되는 경우 MAS Notice PSN08(수탁) 및 Guidelines PS-G03. 제K편 제II장 참조. ↩

3. 소비대차로서의 스테이킹과 대여에 관하여는 제D편 제V장 및 제K편 제VIII장 참조; 도산 시 싱가포르의 신탁 분석에 관하여는 제J편 제V장 및 제N편 제IV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